

# 장례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장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장례구분)** 장례는 학교장·대학장 및 직원장으로 구분한다.

**제3조(장례대상자)**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집행 여부 및 장례구분을 결정한다.

1. 현직 이사장
2. 현직 총장
3. 10년이상 근속한 현직 교수
4. 1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순직한 자
5. 기타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

**제4조(장례위원회의 설치)**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5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중 1인은 유족대표로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는 총괄지원팀이 주관한다.

**제6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

1. 영결식의 일시·장소 및 진행에 관한 사항
2. 장례 집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

**제7조(경비)** ①학교장인 경우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(장례차량비 포함) 및 부고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부고는 1개 일간신문에 게재한다.

②대학장 또는 직원장인 경우 학교는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(장례 차량비 포함)를 부담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